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Ⅳ 소급적용(마이핏1670(2407.1))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간편고지형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반고지형 또는 건강고지형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 ① 이 특별약관은 전환전 계약이 아래 소급적용 대상 간편고지형 상품이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이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고지유형으로 계약을 전환(이하 「계약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모듈] 특별약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대상 상품	판매기간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마이핏1670(2407.1)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24년 7월 8일 ~ 2025년 12월 1일

1.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 경우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인 경우
 3. 전환전 계약이 간편고지 3.10.5.5형 계약이 아닌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무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이하 「무사고 상태」라 합니다)
1. 보통약관의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 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일 이후에 「중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고 입원 또는 수술도 받지 않은 경우
 3. 제2호의 중대질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따릅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무사고 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일 이후에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이하 「무사고 기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보험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 할 수 있는

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제2조 (계약전환 안내 및 신청)

-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계약전환 요건, 계약전환 절차 및 계약전환 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② 계약전환 신청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 ③ 계약전환의 신청기한은 최초계약 체결시 가입한 간편고지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고지유형	계약전환 신청기한
간편고지 315-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고지 325-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고지 335-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고지 345-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고지 355-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에 회사가 계약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계약전환의 적용)

- ①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하여 계약이 전환된 경우, 「전환후 계약」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 계약으로 적용됩니다.

전환전 계약 (최초계약)	[건강모dul] 무사고기간별 전환가능계약(간편고지 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315-5	325-5	335-5	345-5	355-5	365-5	375-5	385-5	395-5	3.10.5-5	
325-5	335-5	345-5	355-5	365-5	375-5	385-5	395-5	3.10.5-5		
335-5	345-5	355-5	365-5	375-5	385-5	395-5	3.10.5-5			
345-5	355-5	365-5	375-5	385-5	395-5	3.10.5-5				전환 불가
355-5	365-5	375-5	385-5	395-5	3.10.5-5				전환불가	

② 「전환후 계약」의 적용일(이하 「계약전환 적용일」이라 합니다)은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로 합니다. 단, 무사고 기간 중 미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되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 됩니다.

1. 보장내용
2. 갱신/비갱신 유형
3. 납입면제 운영에 관한사항
4. 해약환급금지 유형에 관한 사항 등
5. 고지유형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계약전환시점에 원하는 경우, 계약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특별약관을 추가가입(이하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전환시점에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의 변경이 제한되거나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추가가입 대상 특별약관>

- [통합]암 진단비(유사암 제외)(추가가입용)
- [통합]유사암 진단비(추가가입용)
- [통합]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추가가입용)
- [통합]뇌혈관질환 진단비(추가가입용)
- [통합]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추가가입용)
- [통합]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추가가입용)

- [통합]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추가가입용)
- [통합]상해 입원·통원 수술비(추가가입용)
- [통합]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Ⅱ(추가가입용)
- [통합]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Ⅳ(백내장, 대장양성종양제외)(추가가입용)
- [통합]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추가가입용)
- [통합]질병 입원일당(1일이상)(추가가입용)

⑤ 「전환전 계약」에서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세부 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해당 세부 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전환전 계약」에서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이 "계약(특별약관)의 소멸" 조항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효력이 없어진 이후 이미 납입한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전환 적용일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정산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정산금액을 계약전환 적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변경 및 정산금액 등을 환급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환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여 무사고의 판별 기준이 되는 사고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전환과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을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으로 소급하여 원복되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전환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전환 및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이 무효가 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환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사실과, 계약전환 및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이 무효가 된 사실 및 「전환전 계약」으로 원복된 사실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알려드리며 제2항에 따라 환급한 정산금액과 「전환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미납보험료(이하 「추징액」이라

라 합니다)를 추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된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을 위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추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전환과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이 무효가 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보험료 증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제4항의 추정액과 「전환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제지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⑥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전환전 계약」으로 원복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⑦ 제3항에 따라 계약전환 및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전환 및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⑧ 계약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최초계약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